

의 결



국민권익위원회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0 - 184호

의 안 명 「유해야생동물 포획·관리의 실효성 제고방안」

대상기관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의 결 일 2020. 5. 11.

주 문

「유해야생동물 포획·관리의 실효성 제고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0년 5월 11일

위원장 박 은 정

위 원 이 건 리

위 원 권 태 성

위 원 김 기 표

위 원 김 태 응

위 원 김 의 환

위 원 강 재 영

위 원 황 성 주

위 원 홍 인 옥

위 원 윤 영 훈

위 원 김 수 정

위 원 정 정 미

위 원 오 완 호

위 원 이 근 동

위 원 박 홍 규

[별지]

국민의 다양성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국민권익위원회**

유해야생동물 포획·관리의 실효성 제고방안

2020. 5.



국민권익위원회

|| 순 서 ||

I. 추진배경	1
II. 현황	2
III. 문제점	6
IV. 개선방안	14
1.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지급 시 확인절차 강화	14
2.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위 신고자에 대한 제재 강화	16
3. 유해야생동물 포획 후 사체처리에 대한 상세 기준 마련	17
4. 유해야생동물 포획과정에서 인명피해 발생 시 보상대책 마련	17
V. 조치사항 및 기한	18

- 붙임 1.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운영기관 현황
2. 연도별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현황
 3. 관련 법령
 4.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기준

I. 추진배경

- ❖ 추진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 ※ 과제선정 : 언론보도

□ 추진배경

-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 동물에 의한 재산 피해 및 포획수량 증가 추세
 - ※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재산피해 : 28,284백만원('14) → 30,119백만원('16) → 35,082백만원('18)
 - ※ 유해야생동물 포획수량 : 374,496마리('14) → 708,031마리('16) → 737,346마리('18)
-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자체별 '수확기 피해방지단' 운영 및 포획에 따른 포상금 지급
 - ※ 피해방지단 운영 지자체는 192개 기관이며 포획포상금 지급 지자체는 155개 기관
- 유해야생동물 포획사실을 사체 일부, 사진 제출로만 확인하는 등 확인절차가 미흡하여 포상금을 부당 수령하는 사례 발생
 - 허위·중복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더라도 대부분 포상금 미지급(환수)에 그치는 등 불이익이 크지 않아 경각심 부족
- 또한 유해야생동물 포획 후 사체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수질·토양오염 또는 전염병 등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며,
 - 유해야생동물 포획과정에서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가 발생 하는 등 불합리 존재
- 이에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부당수령을 방지하고 유해야생동물 포획 및 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추진경과

- 실태조사(~'20. 1월) ⇨ 개선방안 마련(~'20. 3월) ⇨ 관계기관 의견 조희 및 협의(~'20. 4월 초)

II. 현황

□ 유해야생동물

-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 야생동물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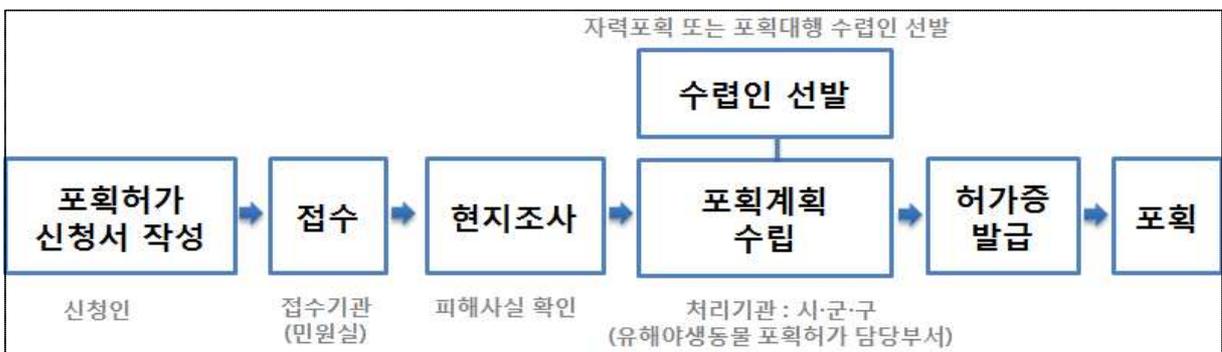
유해야생동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3)	
1.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어치, 직박구리,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2.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농·림·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꿩, 멧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두더지, 쥐류 및 오리류 (오리류 중 원앙이, 원앙사촌, 황오리, 알락쇠오리, 호사비오리, 뿔쇠오리, 붉은가슴흰죽지는 제외한다)	
3. 비행장 주변에 출현하여 항공기 또는 특수건조물에 피해를 주거나, 군 작전에 지장을 주는 조수류(멸종위기 야생동물은 제외한다)	
4. 인가 주변에 출현하여 인명·가축에 위해를 주거나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멧돼지 및 맹수류(멸종위기 야생동물은 제외한다)	
5. 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	
6. 전주 등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	
7.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분변(糞便) 및 털 날림 등으로 문화재 훼손이나 건물 부식 등의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	

□ 유해야생동물 포획

-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가축 또는 농작물 등 피해가 발생하여 포획하고자 하는 경우 시·군·구의 허가 필요하며,

- 포획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지자체는 자력포획 또는 포획대행 수렵인을 선발하여 유해야생동물 포획 절차 진행

※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위해서는 수렵면허를 소지하여야 하며 수렵보험 가입 필요



- 또한 지자체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질병 예방을 위해 매년 4월부터 11월 까지 '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운영 가능
 - ※ 피해방지단은 30명 이내 구성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20명의 범위 내에서 추가 가능, 운영시기는 매년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나 탄력적 운영 가능
- 한국전력공사도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를 포획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유해조류 위탁포획' 실시

□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지자체별로 조례·지침·업무계획 등에 따라 포획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며,
 - 한국전력공사는 '유해조류 위탁포획 비용정산 업무처리 기준'에 따라 까치 포획에 따른 포상금 지급
 - ※ 19년 포획 포상금 예산은 지자체별로 최소 250만원(충남 아산)부터 최대 4억원(강원 평창)이며, 한국전력공사는 17억원

<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지급액(실태조사 시 제출자료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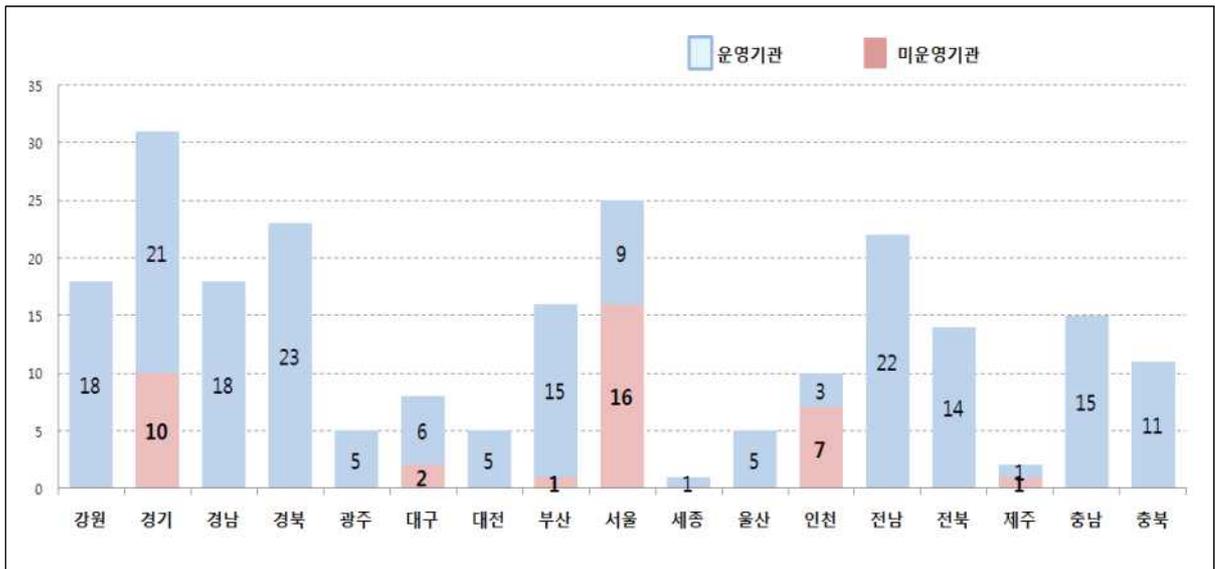
지급기관	구분	최소 지급액	최대 지급액
지방자치단체	멧돼지	1만원 (강원도 동해시)	20만원 (경기도 안성시, 오산시 등 7개 지자체)
	고라니	1만원 (경기도 연천군, 경상남도 거제시)	10만원 (전라북도 김제시, 부안군)
	기타 (조류 등)	1천원 (전라북도 군산시)	7천원 (전라북도 장수군)
한국전력공사	까치	6천원	

- ※ 포획 수량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경기도 의정부시, 충청남도 태안군 등의 경우 출동에 따라 활동비로 지급(1회 4만원, 1일 5만원 등)

□ 피해방지단 운영 지자체 현황

- 지방자치단체 229개* 중 유해야생동물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운영하는 기관은 192개(83.8%)이며, 37개 기관은 미운영(1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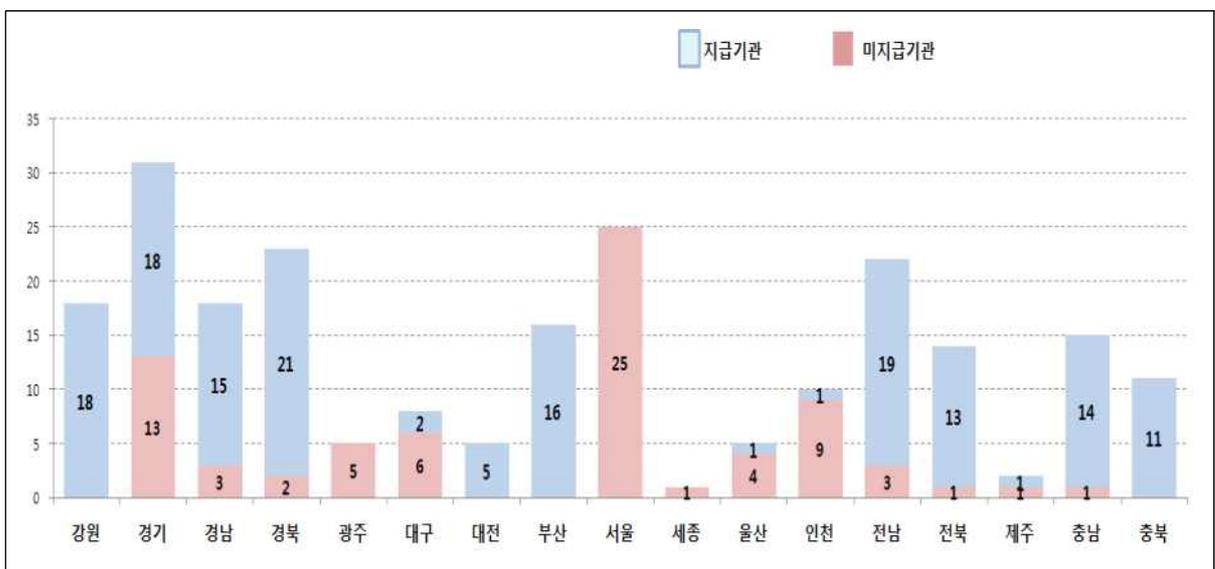
* 기초자치단체 226개 및 세종(1), 제주(2) 포함



□ 포획포상금 지급 지자체 현황

- 지방자치단체 229개* 중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을 지급하는 기관은 155개(67.7%)이며, 74개 기관은 미지급(32.3%)

* 기초자치단체 226개 및 세종(1), 제주(2) 포함



□ 유해야생동물 포획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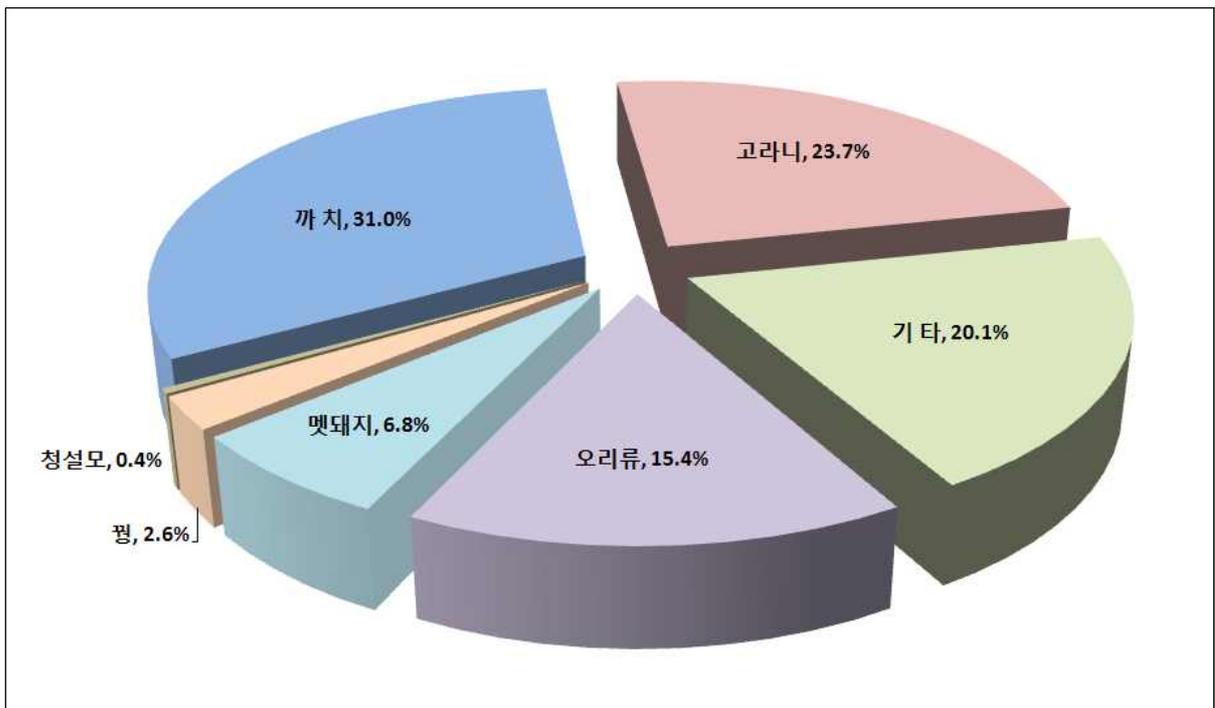
- 지난 5년간('14년~'18년) 유해야생동물 포획수량은 증가추세이며 '18년 기준 737,346마리로 전년대비 1.13배 증가

(단위 : 마리)

연도별	계	멧돼지	고라니	평	까치	청설모	오리류	기타*
'14	374,496	17,267	63,615	40,656	160,337	4,274	31,962	56,385
'15	497,525	28,476	100,631	52,997	188,374	2,446	36,464	88,137
'16	708,031	40,875	128,754	89,814	243,776	5,972	26,396	172,444
'17	653,135	55,954	184,466	59,703	230,022	2,549	44,997	75,444
'18	737,346	50,412	174,386	19,080	228,941	2,987	113,490	148,050

* 기타 : 멧비둘기, 어치, 참새 등

- '18년 기준 유해야생동물 포획수량은 까치(31%) > 고라니(23.7%) > 기타(20.1%) > 오리류(15.4%) 등 순



Ⅲ. 문제점

1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지급 시 확인절차 부실

- 지자체별로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지급을 위한 포획사실 확인 방법이 사체원형, 사체일부, 사진제출 등으로 상이
- 일부 지자체에서 사체 일부, 사진 제출로만 확인하는 등 절차가 부실하여 포획사실을 허위로 신고하는 사건 지속 발생

< 포획사실을 '사체 일부'로 확인 >

「○○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

제18조(포획 포상금 지급) ④ 시장은 접수된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신청서 등의 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월별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고라니, 멧돼지 등 포획 확인 방법은 꼬리로 정한다.**

< 포획사실을 '사진'으로 확인 >

「○○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15조(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 및 운영) ⑨ 제8항에 따라 포획포상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지단 운영기간 종료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확인 표지를 부착한 **동물사진 및 포획포상금 지급 계좌번호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 ○○지자체의 멧돼지, 고라니 포획포상금이 줄줄 새고 있어 말썽임. 업체들이 냉동보관 중인 숫자를 확인한 결과 멧돼지 20마리와 고라니 17마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부정 지급된 금액이 451만원으로 추정됨

(“멧돼지 포획 수 부풀려 포상금 부당 지급”, '20. 1월 경북매일 등 언론보도)

- 보조금 횡령의혹을 받고 있는 야생생물관리협회 ○○지회가 제출한 사진 339건 중 125건(37%)이 중복처리, 허위, 출처불명 의심으로 파악되었음. 이 중에는 유해조수 구제단 활동에서 포획한 고라니를 촬영해 실적으로 제출 한 것도 있음. 이는 실적 부풀리기의 전형적인 사진 자료 조작 수법임.

(“야생생물관리협회 보조금 '긋감 빼먹듯'...실적부풀리기”, '19. 2월 중도일보 등 언론보도)

○ 사체 일부로만 확인하는 경우 털 뭉치에 나뭇잎을 넣어 꼬리인 것처럼 임의로 제작한 것을 제출하는 등 허위 신고 발생

- 2018년 6월 피해방지단 업사인 ○○가 고라니 꼬리 54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고라니 귀를 말려서 가공하거나 털뭉치에 등뼈, 나뭇잎을 넣는 방법 등을 통해 꼬리를 임의로 제작한 것임이 밝혀져 포상금(1,620,000원) 미지급 및 피해방지단 활동 제명 조치
(20. 1.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경상북도 ○○시)

- 멧돼지 등 사체 일부(꼬리, 머리, 다리 등)를 잘라서 제출하는 방법은 동물복지를 외면한 비생태적 행정이라는 비판도 제기되는 상황

- 동물 사체 일부를 제출하는 수당 청구 방식은 "아무리 죽은 동물이라지만, 귀와 꼬리를 자를 때면 두 번 살생하는 기분이 든다." 며 업사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있음. 동물단체 역시 "동물을 학대하는 업기적이고 비윤리적 행정"이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
(“멧돼지 귀·꼬리 잘라와야 포획수당...지자체 '업기행정'”, '16. 9월 연합뉴스 등)



○ 사진 제출로만 확인하는 경우 사진 조작 등을 통해 실제 포획한 수량보다 부풀려 신고하는 등 허위 신고 발생

- 2019년 7월 피해방지단 ◎◎가 제출한 85마리의 고라니 포획사진 중 10장은 정상이고 나머지 75마리의 포획사진은 본인 사진의 중복이나 피해방지단 ◇◇의 사진과 중복됨을 발견함. ◎◎와 ◇◇에게 정당 지급된 포획 포상금 이외 부당 수령한 포상금을 회수처리 함 (20. 1.,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경상북도 ○○군)
- 사체의 오른쪽, 왼쪽을 바꿔가면서 넘버링을 하고 사진을 제출한 것을 적발하여 포상금을 미지급하고 피해방지단 제명 조치함
(20. 1.,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충청남도 ○○시)

- 고라니 포획사체 사진을 4장 제출하였으나 **동물사체에 표기된 락카의 모양, 동물사체의 혈흔 등을 대조하였을 때 동일한 것임을 적발하여 해당 포상금 미지급**
(‘20. 1.,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전라북도 ○○시)



- 피해방지단 □□가 단 시간 내(‘19.7.8.~7.9.) 고라니 19건을 등록하였으나, 포획장소 및 포획일시가 거의 유사하며 **포획사진에 스프레이 번짐이 확인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확인되었음**. 이중으로 포획사실을 등록한 사실을 적발하여 피해방지단 제외 및 포획동물 전부에 대하여 포상금 미지급 조치함
(‘20. 1.,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경상북도 ○○군)

○ 또한 포획사실 확인방법이 다르고 미흡하여 여러 지자체로부터 포상금을 중복 수령하는 사례도 발생

-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지급 시 ○○지자체는 멧돼지 꼬리를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반면 ◇◇지자체의 경우 멧돼지 사체 사진만 있으면 포상금을 지급함. 멧돼지의 사체 꼬리를 자르기 전에 사진을 찍고 ◇◇지자체에 제출, 꼬리는 ○○지자체에 제출하여 **양쪽에서 포상금 수령**

(“구멍난 유해조수 포획 포상금”, ‘17. 9월 경남매일 등 언론보도)

2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위 신고자에 대한 제재조치 미흡

- 허위·중복 등 부정확한 방법으로 유해야생동물 포획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부당수령한 자에 대한 제재조치 미흡
- 대부분 해당 신고 건에 대한 포상금 미지급(환수)에 그치는 등 불이익이 크지 않아 허위 신고에 대한 경각심 부족

※ 제재조치관련 내용을 조례로 규정한 지자체는 16개에 불과

제재 조치	해당 지자체	조례 내용
환수	[13개] 경기도 포천시 경상북도 구미시·울릉군 대전시 대덕구·동구·중구·유성구 전라북도 고창군·김제시·남원시·익산시·전주시·정읍시	신청인이 거짓이나 부정확한 방법으로 포획보상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환수한다.
환수, 피해방지단 제외	[1개] 경상남도 양산시	거짓으로 포획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사람은 포획포상금을 회수하고 향후 방지단 모집대상에서 제외한다.
환수, 향후 포상금 지급 제외	[1개] 경상남도 통영시	거짓으로 포획포상금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자(단체포함)는 포상금을 회수하고 향후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환수, 형사고발	[1개] 부산 기장군	① 군수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확한 방법으로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상·지원을 받게 한 사람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징수의 예에 따라 지급된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부정확한 방법에 따라 지원받도록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후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하며 형사고발할 수 있다.

3

유해야생동물 포획 후 사체처리에 대한 상세기준 부재

-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을 상업적 거래·유통만 금지 할 뿐,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등 사체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부재

※ 지자체·피해농민·포획대행자 등이 협의하여 자가소비, 피해농민 무상제공, 현장 매립 등 자체적으로 처리(「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 III. 행정사항)

- 환경부가 마련한 지침에는 상업적인 거래·유통만 금지 할 뿐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포획된 야생동물의 사체 사후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음.

(“5년간 약 300여마리 유해 야생동물 포획되지만, 사체처리 기준도 없어”, '19. 10월 환경일보 등)

- 유해야생동물 포획 이후의 관리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태임. 연간 수십만 마리의 동물 사체를 처리하면서 안전처리 기준이 없다는 것은 문제임.

(“4년 만에 멧돼지 포획 3배 늘었는데 사체 처리 기준도 없어”, '19. 10월 한국일보 등)

- 사체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포획포상금 수령을 위한 실적 보고 후 사체는 그대로 방치하는 사례 빈번하게 발생

- 멧돼지의 쓸개만 채취한 후 사체를 방치하거나, 고라니의 꼬리만 잘라 실적 보고 후 나머지 사체는 방치

- 아프리카돼지열병 위험지역인 강원도 화천지역에서 감염여부도 알 수 없는 멧돼지 쓸개 밀거래 중임. 포획신고 포상금을 챙기고 쓸개만 건강원에 넘기거나 신고하지 않고 쓸개만 채취한 후 사체를 방치하고 있음.

(“포상금보다 비싼 야생멧돼지 쓸개... 밀거래 포착”, '20. 2월 SBS)



고라니를 비롯한 유해야생동물 포획 실적을 꼬리를 잘라 보고하다 보니 업사들이 실적보고용으로 꼬리만 잘라가고 나머지 사체는 포획한 장소에 그대로 유기하고 있음. 때문에 야산이 아닌 마을수로나 논밭 등에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이 발생하고 있음.

(“꼬리만 잘린 고라니 사체 '논란'”, '16. 3월 오마이뉴스 등)

- 포획된 유해야생동물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불법 매립 등 부실하게 처리할 경우 부패로 인한 악취, 수질·토양오염, 전염병 등 2차 피해 발생 우려

- 포획한 유해야생동물 사체가 부실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매립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의 사체가 장시간 방치되고 있음.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증가... 대책 마련 시급", '15. 9월 아주경제 등 언론보도*)
- 포획된 야생동물 일부는 불법으로 건강원 등으로 유통되거나 불법 매립함으로써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아무렇게나 매립하면 거기서 발생하는 침출수로 인해 토양과 수질이 오염될 우려가 높고 전염병 발생 위험도 있음.

(“무너진 생태계...유해야생동물의 습격”, '15. 9월 환경일보 등)

4

유해야생동물 포획과정에서 인명피해 발생 시 보상대책 미흡

- 수확기 피해방지단이 유해야생동물 포획과정에서 멧돼지 등에 의해 다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나 보상대책 미흡

※ 최근 3년간('17~'19년)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수렵인 인명피해는 16건 발생

- 수확기 피해방지단이 가입하는 수렵보험인 경우 사망 또는 상해 후 후유장애, 대인·대물만 보장되는 등 보장대상이 제한적

※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위해서는 수렵면허를 소지하여야 하며 의무적으로 수렵보험 가입 필요

보험증권
수렵보험

계약번호 : [redacted]

계약지	괴산군청 (28026) 충북 괴산군 괴산읍			계약자번호	[redacted]
보험기간	2019.11.22 00:00 ~ 2020.03.22 00:00				
계약형태종류	단체형	갱신계약여부	아니오	계약일	2019.11.22
계약형태구분	일반	가계비가계 구분	비가계	수렵구분코드	유해야생동물 기동구제 단(야생수렵 포함)
과거손해시정여부	아니오	피보험지과계	본인	다른보험가입여부	아니오
보험계약시점 피보험자	27	납입주기	일시납		
총보험료	115,190 원	첫회보험료	115,190 원 (1회 /일시납)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1/1) ② 보장내용

구분	내용	보장/공제조건	가입금액(KRW)	보험료(KFW)
피보험자명	[redacted]	손해시각후유장애	30,000,000	14,998
계약자와 관계	해당없음	배상책임 대인(배상책임 대인 사고당 보상한도)	1억	85,359
국민건강보험가입여부	가입	배상책임 대물(배상책임 대물 사고당 보상한도)	3천만	14,833
성년월일	[redacted]			
현재건강상태	양호			
과거상별유무	없음			

- 또한 환경부 고시에 따라 농·임·어업상 생산 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나,
 -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 중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어 치료비 및 사망위로금 등 보상금 지급 불가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 규정」(환경부 고시)에 따라 신체상해의 경우 피해를 입은 자에게 최대 500만원, 사망의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

- 다만 최근 고시를 개정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전염병 확산 방지 등 정부의 요청에 따른 포획인 경우 제한적으로 보상대상에 포함되나,
 - 여전히 피해농민이 자력으로 포획하거나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수렵활동 과정에서 인명피해를 입는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2조(피해보상 대상자) ①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의 보상대상은 농업·임업·어업의 영위를 위한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2.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다만,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포획조치를 요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3.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및 관리 등) ⑤ 환경부장관은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피해예방활동이나 질병예방활동, 수확기 피해방지단 또는 인접 시·군·구 공동 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운영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유해야생동물 포획 활동 중 다치거나 사망하더라도 수렵보험으로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하고 정부로부터 보상도 받을 수 없는 상황
 - 영월군청이 꾸린 기동 포획단 소속으로 10년 넘게 멧돼지 사냥을 해온 엽사 우모씨는 국가 요청을 받고 자원 해 총을 들었다가 목숨까지 잃었지만 우 씨 유족은 정부에서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음.

(“멧돼지 포획 요청한 정부, 엽사 목숨 잃자 나몰라라”, '20 1월 SBS 등)
 - 유해야생동물 수렵활동을 20년 넘게 해왔던 김씨는 멧돼지에 받혀 3시간이 넘는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비와 병원비는 스스로 감당해야 했음. 시가 가입한 수렵보험은 사고로 인한 병원비 지급 내용은 없었음.

(“멧돼지 잡으려다 대수술...보험비 한푼 못 받은 엽사 사냥꾼”, '19. 12월 광양뉴스 등)

IV. 개선방안

1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지급 시 확인절차 강화

- 허위 신고를 통한 포상금 부당수령 방지를 위해 포상금 지급 시 포획사실 확인절차 강화
 - 사체원형을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 지자체 내 쓰레기 매립장·소각장을 활용한 사체 확인 등
- ⇒ 각 지자체별 포획포상금 지급관련 조례 및 업무계획에 반영(해당 지자체)

개선(안) 예시

《 사체원형 확인 》

포획사실 증빙은 '사체원형 제출'을 원칙으로 담당공무원이 직접 사체를 검수해야 하며, 사체 일부를 절단하여 확인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직접 사체를 확인한 후에는 재활용을 할 수 없도록 라카 등을 이용해 사체 앞뒤에 표식을 하여야 한다.

근무시간 외, 공휴일 등 포획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부패를 막기 위한 내장 정리 등 사체훼손을 허용하되 빠른 시일 내에 담당공무원이 확인 한다.

《 지자체 내 매립장·소각장 활용 》

유해야생동물 중 멧돼지, 고라니의 경우 지자체에서 사체를 수거하여 처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주반입대상시설인 쓰레기매립장, 소각장에 반입대장을 두어 관리인이 반입을 확인한다.

또한 ASF방역초소에 유해야생동물 사체 방역/보관함과 반입대장을 두어 방역초소 근무자가 사체를 확인하여 청소차량을 이용해 쓰레기매립장 또는 소각장으로 운반하여 처리한다.



《 사체 일부와 사진 교차 확인 등 》

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포획장소에서 왼쪽 귀가 보이게 눕혀 개인일련번호를 라카로 표기 후 다리에 태그 부착하고 꼬리는 5cm이상 절단한다. 타임스탬프(timestamp)어플을 이용하여 포획장소의 주소, GPS 좌표, 포획시간이 나오도록 사진을 찍고 담당공무원에게 사진을 전송한다. 꼬리는 매립장으로 반입하여 매립장 직원이 확인하고 확인대장을 작성 후 매립한다. 매립장 확인대장과 담당공무원에게 발송한 사진 확인대장을 대조하여 확인 완료 후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선(안) 예시

《 저온저장고 활용 》

유해야생동물 포획단은 포획현장에서 사진 촬영 후 포획관리시스템 어플로 전송한다. 이때 포획물에 일련번호(CJ-포획허가번호-날짜-포획물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포획물 저온저장고(사체임시보관시설)에 입고 후 담당공무원에게 입고사실을 문자로 전송한다.

담당공무원은 포획관리시스템에서 중복, 허위 등록 사진들을 선별하는 작업을 실시하고 저온저장고 CCTV등으로 사체 입고사실을 대조하여 확인 한 후 포상금을 지급한다.

참고 (한국전력공사 유해조류 포획물 검수 등 업무처리 기준)

□ 유해조류 포획물 검수

- ① 유해조류 포획물은 포획 대행기관에서 해당 사업소를 직접 내방하여 제출한다.
- ② 유해조류 포획물 검수장소는 해당 사업소 내 지정장소로 한다.
* 검수장소는 각 1,2차 사업소 내 공간 확보 여건을 고려 자체 선정
- ③ 유해조류 포획물 검수는 1차 사업소별로 같은 날짜에 시행(주2회) 함을 원칙으로 하며, 검수일은 1차 사업소 배전운영부서장이 사전에 지정한다. 단, 사전 지정일이 공휴일 이거나 사업소 사정 등으로 검수가 곤란할 경우 별도 지정일에 검수할 수 있다.
- ④ 포획물은 포획 대행기관으로부터 **사체(死體) 전체를 받아 검수해야 하며, 사체 일부를 절단하여 확인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 ⑤ **포획물 검수는 해당 사업소 설비관리부서의 유해조류 포획업무 담당차장이 수행하되, 담당차장이 부재중일 경우 배전운영부서장이 지정하는 간부가 시행하며, 검수결과는 설비관리부서장이 확인한다.**
- ⑥ 포획 대행기관이 제출한 포획물 전량에 대해 검수해야 한다.

□ 유해조류 포획물 사진촬영

- ⑦ 검수한 포획물 전량에 대해 **검수자가 직접 사진촬영을 한다.**
- ⑧ 사진은 1회에 포획물 50마리 단위로 촬영하되 사진으로도 수량 확인이 가능하도록 배열한 후에 촬영하고 **스프레이 페인트를 포획물에 도포한 다음 다시 한 번 촬영한다.(2회 촬영)** 1차사업소 배전운영부서장은 관내 2차사업소별로 가급적 다른 페인트 색상을 사용하도록 사전에 페인트 색상을 지정한다.
- ⑨ 사진촬영 시 확인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촬영일시, 촬영수량, 검수자 등의 내용을 A4용지에 기재하여 포획물과 같이 촬영한다.

* 사진촬영 방법(예: 포획물 95마리인 경우)

○ 사업소명 : ○○지사
○ 촬영번호 : 2-1
○ 촬영일자 : 2019. 1. 3(목) 14시
○ 촬영수량 : 50마리(1~50)
○ 검 수 자 : 배전운영부 직원 ○○○

○ 사업소명 : ○○지사
○ 촬영번호 : 2-2
○ 촬영일자 : 2019. 1. 10(목) 14시
○ 촬영수량 : 45마리(51~95)
○ 검 수 자 : 배전운영부 직원 ○○○

- ⑩ 검수결과는 포획물 사진과 함께 영업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배전운영부서장은 포획물 사진을 확인 후 결재한다.

2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위 신고자에 대한 제재 강화

- 포획사실을 허위·중복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제재조치에 대한 근거를 조례, 업무계획 등에 명확하게 마련
 - 해당 포상금 미지급(환수) 뿐 아니라, 피해방지단 제명, 향후 일정 기간 피해방지단 선발 제외, 제재부가금 부과 등 제재 강화
- ⇒ 각 지자체별 포획포상금 지급관련 조례 및 업무계획에 반영(해당 지자체)

개선(안) 예시

「○○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15조(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 및 운영) ① ~ ⑨ 생략

⑩ 거짓으로 포획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사람은 포획포상금을 회수하고 향후 방지단 모집대상에서 제외한다.

「○○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벌칙) ① 군수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상·지원을 받게 한 사람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징수의 예에 따라 지급된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원받도록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후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하며 형사고발 할 수 있다.

3 유해야생동물 포획 후 사체처리에 대한 상세 기준 마련

- 유해야생동물 포획 후 방치하거나 불법 매립을 하지 않도록 소각, 매립 등 사체처리 방법에 대한 상세 기준 마련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체처리 방법 신설(환경부)

참고 (한국전력공사 유해조류 포획물 사후처리 기준)

□ 포획물 사후처리

- ① 검수 및 사진촬영을 완료한 포획물은 지자체 쓰레기 봉투를 활용, 해당 사업소 인근 소각·매립시설에 방문하여 직접 인계, 폐기물관리법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폐기처리해야 하며, 포획 대행기관에 포획물 폐기처리를 위임하면 안 된다. 단, 소각·매립시설이 원거리일 경우, 쓰레기 수거차량에 직접 배출하여 포획물 재사용 등 불법행위 발생 개연성을 차단하여야 한다.
- ② 포획물을 사업소 주변에 방치하여 민원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4 유해야생동물 포획과정에서 인명피해 발생 시 보상대책 마련

-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대책 마련

- 보험사와 협업하여 수렵활동 중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 보장 받을 수 있는 단체수렵보험 상품개발 등

※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질병예방 등 공익목적으로 포획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인명피해 발생 시 보상 필요

⇒ 단체수렵보험 상품개발 등 보상대책 마련(환경부)

V. 조치사항 및 기한

□ 세부과제별 조치사항

과제명	조치사항	소관기관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지급 시 확인절차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위 신고를 통한 포상금 부당수령 방지를 위해 포상금 지급 시 포획사실 확인절차 강화 ⇒ 각 지자체별 포획포상금 지급관련 조례 및 업무계획에 반영 	포상금 운영 지자체 (155개)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위 신고자에 대한 제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획사실을 허위·중복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제재 강화 및 제재조치에 대한 근거를 조례, 업무계획 등에 명확하게 마련 ⇒ 각 지자체별 포획포상금 지급관련 조례 및 업무계획에 반영 	포상금 운영 지자체 (155개)
유해야생동물 포획 후 사체처리에 대한 상세 기준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야생동물 포획 후 방치하거나 불법 매립을 하지 않도록 사체처리 방법에 대한 상세 기준 마련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체처리 방법 신설 	환경부
유해야생동물 포획과정에서 인명피해 발생 시 보상대책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대책 마련 ⇒ 단체수령보험 상품개발 등 보상대책 마련 	환경부

□ 조치기한 : '20. 12월

붙임 1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운영기관 현황

광역 단위	기초 단체	지급 근거	관련 예산	지급동물 (지급액)	증빙방법
강원도 (18)	강릉시	조례	75백만원	고라니 (2만원)	꼬리
	고성군	조례	60백만원	멧돼지 (5만원) 고라니 (4만원)	사진, 꼬리
	동해시	업무계획	10백만원	멧돼지 (1만원) 고라니 (2만원)	사체원형, 사진
	삼척시	업무계획	62백만원	멧돼지 (5만원) 고라니 (3만원)	사진
	속초시	조례	14백만원	멧돼지 (5만원) 고라니 (4만원)	사진, 꼬리
	양구군	조례	60백만원	멧돼지(4만원) 고라니(4만원)	꼬리, 관리대장
	양양군	업무계획	84백만원	멧돼지(4만원) 고라니(4만원)	꼬리
	영월군	조례	240백만원	멧돼지(4만원) 고라니 (4만원)	꼬리
	원주시	지침	200백만원	멧돼지(5만원) 고라니(4만원)	사진, 꼬리
	인제군	조례	85백만원	멧돼지 (5만원) 고라니 (4만원) 까치 (5천원) 까마귀 (5천원) 직박구리 (5천원) 멧비둘기 (5천원)	꼬리, 문자
	정선군	조례	105백만원	멧돼지(5만원) 고라니 (4만원)	꼬리, 귀
	철원군	조례	60백만원	멧돼지 (4만원) 고라니 (4만원)	사진, 꼬리
	춘천시	조례	203백만원	멧돼지 (5만원) 고라니 (3만원) 조류 (5천원)	꼬리, 머리 및 출동일지 등
	태백시	업무계획	18백만원	멧돼지 (3만원) 고라니 (3만원)	사진
	평창군	조례	400백만원	멧돼지(5만원) 고라니 (3만원)	사진, 꼬리
	홍천군	조례	290백만원	멧돼지(5만원) 고라니 (4만원)	사진, 꼬리
	화천군	지침	40백만원	멧돼지 (5만원) 고라니 (3만원)	꼬리, 출동일지 등
	횡성군	조례	90백만원	멧돼지(4만원) 고라니 (4만원)	꼬리

광역 단위	기초 단체	지급 근거	관련 예산	지급동물 (지급액)	증빙방법
경기도 (18)	가평군	지침	70백만원	멧돼지(10만원) 고라니 (3만원)	사체원형 또는 꼬리
	광주시	업무계획	100백만원	멧돼지(5~10만원) 고라니 (2만원)	사진
	김포시	조례	10백만원	멧돼지 (4만원) 고라니 (4만원) 조류, 기타(5천원)	꼬리, 다리
	남양주시	조례	13.5백만원	멧돼지(6만원) 고라니(3만원)	사진, 꼬리
	성남시	조례	5백만원	멧돼지(5~10만원) 고라니(2~3만원)	사진
	안성시	업무계획	120백만원	멧돼지 (20만원) 고라니 (5만원)	사진(꼬리 검수)
	양주시	조례	21백만원	고라니 (3만원)	사진, 꼬리
	양평군	조례	157백만원	멧돼지 (3만원) 고라니 (2만원)	꼬리
	여주시	조례	90백만원	멧돼지(5만원) 고라니 (3만원)	꼬리, 활동일지 등
	연천군	조례	10백만원	고라니 (1만원)	꼬리
	오산시	업무계획	19백만원	멧돼지 (20만원) 고라니 (3만원)	사진, 꼬리
	용인시	조례	125백만원	멧돼지(5만원) 고라니(3만원)	사진
	의정부시	조례	3.5백만원	5만원(출동 일)	총기 입출고 대장 조회
	이천시	조례	207백만원	멧돼지(3만원) 고라니 (3만원)	꼬리
	파주시	조례	7.8백만원	멧돼지(3만원) 고라니 (3만원)	꼬리
	평택시	조례	4백만원	실탄구입비 지원	사진
	포천시	조례	30백만원	멧돼지 (5만원) 고라니 (3만원)	사진, 꼬리
	하남시	조례	10백만원	멧돼지(5만원이내) 고라니 (3만원이내)	사체원형, 사진

광역 단위	기초 단체	지급 근거	관련 예산	지급동물 (지급액)	증빙방법
경상남도 (15)	거제시	조례	20백만원	멧돼지(3만원) 고라니(1만원)	사진
	거창군	조례	56백만원	멧돼지 (7만원) 고라니 (3만원)	사진
	고성군	조례 업무계획	9백만원	멧돼지 (10만원) 고라니 (5만원)	사진, 꼬리 또는 귀
	김해시	조례	20백만원	멧돼지(5만원) 고라니 (2만원)	사진
	남해군	조례	33백만원	멧돼지(10만원) 고라니(2만원)	사진
	밀양시	업무계획	24백만원	멧돼지(5만원) 고라니 (3만원)	사진, 꼬리
	사천시	업무계획	25백만원	멧돼지(7만원) 고라니(3만원)	사진
	양산시	조례	10백만원	멧돼지(7만5천원) 고라니(3만원) 그외(5천원)	사진
	의령군	업무계획	18백만원	고라니(3만원)	사진
	창원시	업무계획	15백만원	멧돼지(5만원) 고라니(5만원)	
	통영시	조례	40백만원	멧돼지(10~20만원) 고라니(만원)	사진, 확인자 서명
	하동군	조례	16백만원	멧돼지(5만원) 고라니 (3만원)	사진, 확인자 서명
	함안군	업무계획	11.3백만원	멧돼지(5만원) 고라니(3만원)	사진 또는 사체원형
	함양군	조례	130백만원	멧돼지(6~12만원) 고라니(3만원)	사진, 관리대장
	합천군	업무계획	60백만원	멧돼지(5만원) 고라니(3만원)	사진
경상북도 (21)	경주시	업무계획	40백만원	고라니(3만원)	사진
	고령군	업무계획	33백만원	멧돼지(5만원) 고라니(3만원) 청솔모(7천원) 까치(5천원)	사진

광역 단위	기초 단체	지급 근거	관련 예산	지급동물 (지급액)	증빙방법
경상북도 (21)	구미시	조례	25백만원	멧돼지(5만원) 고라니(3만원) 조류(5천원)	사진, 시스템 등록
	군위군	업무계획	80백만원	멧돼지(5만원) 고라니(3만원)	사진
	김천시	조례	23백만원	멧돼지(5만원) 고라니(3만원)	사진, 시스템 등록
	문경시	조례	80백만원	멧돼지(3만원) 고라니(3만원) 청솔모(3천원) 까치(3천원)	사진
	봉화군	조례	173백만원	고라니 (3만원)	사체원형
	상주시	조례	146백만원	멧돼지(5만원) 고라니(3만원)	사진, 꼬리, 시스템 등록
	성주군	조례	28백만원	고라니 (3만원)	사진
	안동시	업무계획	100백만원	멧돼지(5만원) 고라니(3만원)	사진, 시스템 등록
	영덕군	조례	62백만원	멧돼지(5만원) 고라니(3만원)	사진, 시스템 등록
	영양군	조례	110백만원	멧돼지(5만원) 고라니(3만원) 조류(5천원)	사체원형 확인 또는 귀 등
	영주시	업무계획	125백만원	멧돼지(3만원) 고라니(3만원)	사체원형 확인 및 시스템 등록
	영천시	업무계획	70백만원	멧돼지(5만원) 고라니(3만원) 청솔모(5천원) 까치(3천원)	꼬리, 활동일지 등
	예천군	조례	120백만원	멧돼지(5만원) 고라니(3만원)	사체원형, 시스템등록
	울진군	업무계획	70백만원	멧돼지(5만원) 고라니(3만원)	사진, 시스템 등록
	의성군	조례	100백만원	멧돼지(5만원) 고라니(3만원)	사진, 시스템 등록
	청도군	조례	39백만원	고라니 (3만원)	사진, 시스템 등록
	청송군	업무계획	130백만원	멧돼지(5만원) 고라니(3만원)	사진, 시스템 등록
	칠곡군	조례	30백만원	고라니(3만원)	사진, 시스템 등록
	포항시	조례	50백만원	멧돼지(5만원) 고라니(3만원) 청솔모(5천원) 까치(3천원)	사진

광역 단위	기초 단체	지급 근거	관련 예산	지급동물 (지급액)	증빙방법
대구광역시 (2)	달성군	조례	16백만원	멧돼지 (5만원) 고라니 (3만원)	사진, 꼬리 등
	수성구	조례	2.64백만원	멧돼지 (4만원) 고라니 (2만원)	사진
대전광역시 (5)	대덕구	조례	16백만원	멧돼지(5만원) 고라니(3만원)	사진 (사체에 락카로 고유번호 표시)
	동구	조례	16.5백만원	멧돼지(5만원) 고라니(3만원) 기타 (5천원)	사체원형 또는 사진
	서구	조례	3백만원	멧돼지(5만원) 고라니 (3만원)	사진
	유성구	조례	3백만원	멧돼지 (5만원)	사진
	중구	조례	3백만원	멧돼지(5만원) 고라니(3만원)	사진
부산광역시 (16)	강서구	조례	38백만원 (부산 전체)	멧돼지 (10만원)	사체원형 원칙, 불가 시 사진
	금정구	조례	38백만원 (부산 전체)	멧돼지 (10만원)	사체원형 원칙, 불가 시 사진
	기장군	조례	38백만원 (부산 전체)	멧돼지 (10만원)	사체원형 원칙, 불가 시 사진
	남구	조례	38백만원 (부산 전체)	멧돼지 (10만원)	사체원형 원칙, 불가 시 사진
	동구	조례	38백만원 (부산 전체)	멧돼지 (10만원)	사체원형 원칙, 불가 시 사진
	동래구	조례	38백만원 (부산 전체)	멧돼지 (10만원)	사체원형 원칙, 불가 시 사진
	부산진구	조례	38백만원 (부산 전체)	멧돼지 (10만원)	사체원형 원칙, 불가 시 사진
	북구	조례	38백만원 (부산 전체)	멧돼지 (10만원)	사체원형 원칙, 불가 시 사진
	사상구	조례	38백만원 (부산 전체)	멧돼지 (10만원)	사체원형 원칙, 불가 시 사진
	사하구	조례	38백만원 (부산 전체)	멧돼지 (10만원)	사체원형 원칙, 불가 시 사진
	서구	조례	38백만원 (부산 전체)	멧돼지 (10만원)	사체원형 원칙, 불가 시 사진
	수영구	조례	38백만원 (부산 전체)	멧돼지 (10만원)	사체원형 원칙, 불가 시 사진
	연제구	조례	38백만원 (부산 전체)	멧돼지 (10만원)	사체원형 원칙, 불가 시 사진
	영도구	조례	38백만원 (부산 전체)	멧돼지 (10만원)	사체원형 원칙, 불가 시 사진
	중구	조례	38백만원 (부산 전체)	멧돼지 (10만원)	사체원형 원칙, 불가 시 사진
	해운대구	조례	38백만원 (부산 전체)	멧돼지 (10만원)	사체원형 원칙, 불가 시 사진

광역 단위	기초 단체	지급 근거	관련 예산	지급동물 (지급액)	증빙방법
울산광역시 (1)	울주군	조례	70백만원	멧돼지(2만원) 고라니(3만원) 조류(5천원)	사진
인천광역시 (1)	강화군	업무계획	100백만원	고라니(4만원)	꼬리
전라남도 (19)	강진군	조례	36백만원	멧돼지(5만원) 고라니(5만원)	사진
	고흥군	조례	30백만원	멧돼지(10만원) 고라니(5만원)	사진
	곡성군	조례	52백만원	멧돼지(10만원) 고라니(5만원)	사진
	광양시	조례	105백만원	멧돼지(6만원) 고라니(3만원)	사진
	구례군	조례	21백만원	멧돼지(6만원) 고라니(3만원)	사진
	나주시	조례	4백만원	멧돼지(3만원) 고라니(3만원)	사진
	담양군	조례	60백만원	멧돼지(3만원) 고라니(3만원)	사진
	목포시	조례	11.3백만원	멧돼지(10만원) 고라니(3만원)	사진
	무안군	조례	35백만원	멧돼지(3만원) 고라니(3만원)	사진
	보성군	조례	35백만원	멧돼지(10만원) 고라니(3만원)	사진
	순천시	조례	66백만원	멧돼지(8만원) 고라니(3만원)	사진
	신안군	조례	80백만원	멧돼지(20만원) 고라니(3만원)	사진, 확인자 확인
	영광군	조례	37백만원	멧돼지(10만원) 고라니(3만원)	사진 또는 꼬리
	영암군	조례	16백만원	멧돼지(3만원) 고라니(3만원)	사진
	장성군	조례	16.5백만원	멧돼지(3만원) 고라니(3만원)	사진
	장흥군	조례	15백만원	멧돼지(3만원)	사진
	함평군	조례	15백만원	멧돼지(3만원) 고라니(3만원)	사진
	해남군	조례	15백만원	멧돼지(3만원) 고라니(3만원)	사진
	화순군	조례	15백만원	멧돼지(3만원) 고라니(3만원)	사진

광역 단위	기초 단체	지급 근거	관련 예산	지급동물 (지급액)	증빙방법
전라북도 (13)	고창군	조례	33백만원	멧돼지(10만원) 고라니 (2만원) 까치 (5천원)	사진
	군산시	조례	10백만원	멧돼지(10만원) 고라니 (5만원) 까치 (1천원)	사진
	김제시	조례	30백만원	멧돼지(20만원) 고라니(10만원) 까치(5천원)	사진, 확인자 확인
	남원시	조례	50백만원	멧돼지(10만원) 고라니(5만원) 조류(5천원)	사진
	무주군	업무계획	45백만원	고라니 (3만원)	사진, 꼬리
	부안군	조례	7.5백만원	멧돼지(20만원) 고라니(10만원) 까치(5천원)	사진
	완주군	조례	50백만원	멧돼지 (10만원) 고라니(5만원) 까치(5천원)	사진
	익산시	조례	27백만원	멧돼지(20만원) 고라니 (3만원) 비둘기 (5천원) 까치 (5천원)	사진
	임실군	업무계획	30백만원	멧돼지(5만원) 고라니(5만원)	사진
	장수군	조례	50백만원	멧돼지(~10만원) 고라니(~7만원) 까치(~7천원)	사진, 꼬리
	전주시	업무계획	5백만원	멧돼지(10만원) 고라니 (5만원)	사진, 현장 확인 등
	정읍시	조례	10백만원	멧돼지(10만원) 고라니 (5만원)	사체원형 또는 사진
	진안군	조례	145백만원	멧돼지(10만원) 고라니 (7만원) 꿩 (5천원) 까치 (5천원)	사진
제주특별 자치도 (1)	서귀포시	업무계획	150백만원	멧돼지(3만원) 노루(3만원) 까치(5천원) 까마귀(5천원)	사진 또는 담당자 확인 등

광역 단위	기초 단체	지급 근거	관련 예산	지급동물 (지급액)	증빙방법
충청남도 (14)	계룡시	조례	10백만원	멧돼지(10만원) 고라니(3만원)	사진, 꼬리
	공주시	조례	203백만원	멧돼지(10만원) 고라니 (3만원)	사진
	금산군	조례	50백만원	멧돼지(5만원) 고라니(3만원)	사진
	논산시	조례	100백만원	멧돼지(10만원) 고라니 (3만원) 청솔모, 까치 등 (3천원)	사진, 꼬리
	당진시	업무계획	150백만원	멧돼지(10만원) 고라니(3만원) 까치(6천원) 멧비둘기(5천원)	사진, 꼬리, 다리
	부여군	조례	100백만원	멧돼지(10만원) 고라니 (3만원)	사진
	서산시	조례	130백만원	멧돼지(15만원) 고라니(3만원)	사진, 꼬리, 총기수첩 등
	서천군	조례	15백만원	멧돼지(7만원) 고라니(3만원)	사체원형 또는 사진
	아산시	조례	2.5백만원	청솔모 (5천원)	꼬리
	예산군	조례	50백만원	멧돼지(5만원) 고라니(3만원)	사진 또는 사체원형
	천안시	업무계획	10백만원	청설모 (5천원)	사진
	청양군	조례	100백만원	멧돼지(10만원) 고라니(3만원) 청솔모(5천원) 까치(5천원) 비둘기(5천원)	사진, 꼬리
	태안군	조례	150백만원	멧돼지(4만원/출동일) 고라니(3만원), 그외(5천원)	꼬리, 총기출고증
	홍성군	조례	60백만원	멧돼지(5만원) 고라니 (3만원) 청솔모 (5천원) 까치 (5천원) 등	사체원형 또는 사진

광역 단위	기초 단체	지급 근거	관련 예산	지급동물 (지급액)	증빙방법
충청북도 (11)	괴산군	조례	66백만원	멧돼지 (5만원) 고라니 (3만원) 조류 (5천원)	사체원형 또는 사진
	단양군	업무계획	117백만원	멧돼지(3만원) 고라니 (3만원)	사진
	보은군	지침	169백만원	멧돼지(12만원) 고라니(3만원)	사진, 결과보고서
	영동군	조례	140백만원	멧돼지(5만원) 고라니 (3만원)	사체원형
	옥천군	지침	150백만원	멧돼지(5~10만원) 고라니(3만원) 기타(5천원)	사체원형 또는 사진
	음성군	업무계획	95백만원	멧돼지 (10만원) 고라니 (2만원)	사진
	제천시	업무계획	238백만원	멧돼지(5만원) 고라니(3만원) 조류(3만원/출동일)	사진, 총기입출고내역
	증평군	조례	8.3백만원	멧돼지(3만원) 고라니(3만원)	사체원형
	진천군	조례	19.5백만원	고라니(3만원)	사체원형
	청주시	조례	125백만원	멧돼지(7만원) 고라니 (5만원) 산비둘기(5천원) 까치 (5천원)	사진
	충주시	조례	147백만원	멧돼지(10만원) 고라니 (3만원)	사진

《 분야별 피해실태 (단위 : 백만원) 》

연 도	계	농작물	양식장	항공기	전력시설
'14	28,284	10,883	853	1,006	15,542
'15	23,644	10,672	532	215	12,225
'16	30,119	10,911	1,525	1,278	16,405
'17	37,653	12,676	995	6,424	17,558
'18	35,082	11,767	808	1,374	21,133

《 동물별 피해실태 (단위 : 백만원) 》

연 도	계	멧돼지	고라니	꿩	까 치	청설모	오리류	기 타*
'14	10,883	4,202	2,309	458	1,710	94	475	1,635
'15	10,672	4,701	2,055	300	1,588	138	353	1,537
'16	10,911	5,648	2,460	259	1,263	79	276	926
'17	12,676	7,850	2,269	259	1,276	62	260	700
'18	11,767	6,509	2,593	404	1,021	59	394	787

* 기타 : 멧비둘기, 어치, 참새 등

《 농작물별 피해실태 (단위 : 백만원) 》

연 도	계	사 과	배	포 도	호 도	벼	채소	기 타*
'14	10,883	865	896	288	115	1,199	3,160	4,360
'15	10,672	877	961	309	139	1,526	2,452	4,408
'16	10,911	1,103	918	357	135	1,609	2,642	4,147
'17	12,676	1,481	979	338	75	1,799	3,312	4,692
'18	11,767	1,236	842	97	69	1,475	3,316	4,732

* 기타 : 고구마, 옥수수, 감자, 콩, 복숭아 등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및 관리 등) ①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 상황, 유해야생동물의 종류 및 수 등을 조사하여 과도한 포획으로 인하여 생태계가 교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의 요청이 있으면 제44조에 따른 수렵 면허를 받고 제51조에 따른 수렵보험에 가입한 사람에게 포획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포획을 대행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산림청장 또는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⑤ 환경부장관은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피해예방활동이나 질병예방활동, 수확기 피해방지단 또는 인접 시·군·구 공동 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운영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⑥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⑦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 안전수칙, 포획 방법 및 허가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⑧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의 처리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⑨ 제5항에 따른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구성방법, 운영시기, 대상동물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8조의2(야생생물관리협회) ① 야생생물의 보호·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야생생물관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 1. 야생동물, 멸종위기식물의 밀렵·밀거래 단속 등 보호업무 지원
 - 2. 유해야생동물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업무 지원
 - 3. 수렵장 운영 지원 등 수렵 관리
 - 4. 수렵 강습 등 야생생물 보호·관리에 관한 교육과 홍보
-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제44조에 따라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과 야생생물의 보호·관리에 적극 참여하려는 자로 한다.
- ④ 협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회비,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회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⑥ 환경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하면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⑦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과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유해야생동물 확인 표지를 발급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확인표지는 반드시 반납받은 후 폐기하여야 한다.

제31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기준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을 허가하려는 경우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명·가축 또는 농작물 등 피해대상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시기, 포획도구, 포획 지역 및 포획수량이 적정할 것
 2. 포획 외에는 다른 피해 억제 방법이 없거나 이를 실행하기 곤란할 것
-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포획허가를 받은 자가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 포획도구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구를 이용하여 포획할 것
 2.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유해야생동물 확인표지를 즉시 부착하되, 사용 후 남은 확인표지는 허가기관에 지체 없이 반납할 것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포획허가를 신청한 자가 자력으로 포획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포획을 대행(총기를 이용한 포획만 해당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포획을 대행하려는 사람의 수렵면허 보유기간, 수렵 경력, 법령의 위반 전력 유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자는 법 제23조 제6항에 따라 포획한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에 포획 일시·야생동물명·수량 및 포획장소 등을 적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1조의2(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안전수칙)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23조 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1. 총기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포획허가 지역의 지형·지물(地物), 산림·도로·논·밭 등에 주민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할 것
2. 포획허가를 받은 자는 식별하기 쉬운 의복을 착용할 것
3. 인가(人家)·축사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총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인가·축사와 인접한 지역의 주민을 미리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한 후에는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

제31조의3(수확기 피해방지단의 구성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시·군·구별로 각 하나의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단원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수렵면허를 소지하고 수렵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우선 선발해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별 농작물 수확시기, 피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명의 범위에서 단원을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

1. 법 제44조에 따른 수렵면허 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총포소지 허가를 취득 또는 재취득한 후 5년 이상 경과한 사람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포획허가 신청일부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수렵장에서 수렵한 실적이 있는 사람 또는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실적이 있는 사람
3. 포획허가 신청일부부터 5년 이내에 이 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지 아니한 사람

③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운영시기는 매년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별 농작물 수확시기, 피해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포획 대상동물은 별표 3에 따른 유해야생동물로 한다.

붙임 4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기준

(환경부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 발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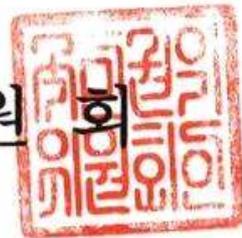
피 해 구 분	포획시기 및 기간	포 획 도 구	포 획 지 역	포획수량
농·림·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	-피해가 발생 하였을 때. 다만, 그물, 포획틀, 포획장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도 포획 가능 * 유해야생동물이 농경지 등에 침입하려고 시도한 흔적이 뚜렷이 남아 있는 경우 자력 포획허가 가능 -2개월 이내. 다만, 포획틀, 포획장은 6개월 이내 * 대리포획시 30일 이내	엽총·공기총·석궁(도르레 석궁 제외), 그물, 포획틀, 포획장	-조류(새) : 피해 지역 리·동단위 -수류(짐승) : 피해 지역 리·동단위 * 포획틀 포획장을 이용한 포획은 피해지 인근에 설치	
비행장 주변에 출현하여 항공기 또는 특수 건조물에 피해를 주거나 군 작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유해야생동물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요청기간 동안	엽총·공기총·마취총·기타 총포 포획틀, 포획장	-항공기·특수 건조물 피해 : 피해 지역 및 그 주변 출몰지 -군 작전 지장: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하여 결정	시장·군수·구청장이 피해 정도·서식실태·포획목적 등을 감안하여 결정
전주 등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6개월 이내	엽총·공기총·석궁(도르레 석궁 제외)	피해지역 리·동단위	
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	-피해가 발생 하였을 때 -1개월 이내	엽총, 포획틀, 포획장	피해지역 리·동단위 * 포획틀 포획장을 이용한 포획은 피해지 인근에 설치	
인·축에 위해를 주거나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맹수류(멸종위기야생동물은 마취총 등을 사용하여 생포) 및 멧돼지	-위해를 주거나 위해 발생 우려가 있을 때 -필요시	엽총·공기총·마취총·기타 총포, 포획틀, 포획장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하여 결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지조사 결과 상기 기간 내에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를 위한 포획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감안하여 별도로 포획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정본입니다.

2020. 5. 12.

국 민 권 의 위 원



A O R C